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한범 의원 등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O 발의일자 : 2017년 12월 5일

O 회부일자 : 2017년 12월 7일

3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O 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대상 (안 제2조)
- O 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한도 (안 제4조~제5조)
- O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(안 제6조)
- O 잘못 지급된 포상금의 환수 (안 제11조)

5. 검토의견

- 의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-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제149조에도 버려지거나 은닉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지방세입 증대를 위해 기여한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.
- 다만 세입증대에 기여한 민간인은 별론으로 하고 세입 징수를 담당업무로 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타 시·도에 는 이미 포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,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세입징수 담당 공무원이 세입 징수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의 세입증대 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 임: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. 끝.